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30
----------	------

발의연월일 : 2021. 3. 12.

발 의 자 : 유정주 · 권인숙 · 김승원
김용민 · 김주영 · 노웅래
도종환 · 민형배 · 박영순
박 정 · 박홍근 · 서동용
심상정 · 오영환 · 윤건영
이광재 · 이동주 · 이병훈
이상직 · 이상현 · 이수진
이원택 · 이탄희 · 이해식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전용기 · 정청래 · 홍기원
홍정민 의원(31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업종들에서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공연, 축제,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어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이하 “예술인등”이라 함)이 계약 파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

실을 입고 있으나, 예술인등 가운데에는 프리랜서가 많고 계약 형태도 단기 계약이 주를 이루다보니 피해의 규모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의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이하 “손실보상지원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게도 적용함(안 부칙 제3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의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 감염병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감염병을 말한다.

2. “예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나.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

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

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

3. “방역대책”이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

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들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등 지원)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지원위원회) ①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이하 “손실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손실보상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손실보상 및 지원의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 및 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등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안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근거, 지급 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1. 코로나19 발생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이익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 기간의 이익 간 차액
2. 코로나19 발생 전 예술인들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중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파기된 계약의 금액

제11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소멸시효)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게도 적용한다.